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7. 29 조례 제216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·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식재산"이란 「지식재산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있는 것을 말한다.
- 2. "신지식재산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·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.
- 3. "지식재산권"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
- 4. "사업자"란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,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.
- 5. "대학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나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
 - 다. 그 밖에 연구인력,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·외 연구기

관 또는 단체 및 법인

- 6. "지역지식재산센터"란 「발명진흥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용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이 나이, 성별, 장애,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·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등

- 제5조(진흥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
 - 2. 지식재산, 신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·보호, 활용 방안
 - 3.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
 - 4.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- 5.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
 - 6.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
 - 7.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전담부서의 설치 등)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.

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의 촉진

- 제7조(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
 - 2.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
 - 3. 특허청·저작권보호위원회·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
 - 4. 「발명진흥법」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
 - 5.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
 - 6.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
 - 7.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)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 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·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
 - 2.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
 - 3.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
 -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- 제9조(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)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 관과 협력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)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,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
- 제12조(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)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신고·상담 창구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장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

- 제13조(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로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
 - 2.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

-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
- 2.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- 3.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 런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
- 4. 초·중·고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
- 5.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6. 변호사,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7.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
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6조(자료의 제출과 협력 요청)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, 단체, 학교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 의 제출, 의견표명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7조(비밀보호)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수당 등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장 보칙

제19조(위탁 및 재정지원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

② 시장은 지식재산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